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 검 토 보 고

기 획 경 제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8. 2. 11

나. 회부일자 : '98. 2. 11

3. 제안이유

-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6항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4조1, 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 및 산업단지 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로 관리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함

4. 주요골자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도지방 산업단지의 위임·위탁기관을 청원군수에서 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2항 동법 제31조6항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4조1, 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현도지방산업단지관리권한 위임·위탁기관을 청원군수에서 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 및 산업단지 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